

## FSS/2112-20 :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

- 쟁점 분야: 연결재무제표 작성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(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)
- 결정일: 2014년
- 회계결산일: 2011.1.1.~2011.12.31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(이하 ‘회사’)는 동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, 종속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,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 종속회사에 판매하고 있다. 회사는 ‘1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수익·비용, 미실현손익, 투자·자본 상계 등 다른 연결조정분개는 정상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매출채권·매입채무 34억원의 상계처리를 누락하였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

회사는 ’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일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아 매출채권·매입채무 34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.

### 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(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)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, 이와 관련된 잔액,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.

### 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① 회계감사기준 200(재무제표 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) 및 500(감사증거)에 따르면,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,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회계감사 실무지침 3-780(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실무지침) 문단8에 따르면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·채무 기말잔액 등의 상계제거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.

② 이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.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,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## 5. 시사점

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를 공시하기 전에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누락한 결산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, 감사인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누락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.